

2025학년도 우신중고등학교 매점 사용자 선정 공고

2024.09.30.

우신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학교법인 우천학원 및 산하기관(우신중학교, 우신고등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학교법인 우천학원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 | | | |
|-----------------|--|--------------------|----------------------|------|----------------|
| 건명 | 우신중고등학교 (매점) 사용 허가 대상자 선정 입찰 공고 | | | | |
| 사용수익허가 재산 현황 | 용도 | 학교매점 | 학교 현황 | 학급 수 | 31학급 (중고 합산) |
| | 사용면적 | 23.76㎡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 학생 수 | 1,019명 (중고 합산) |
|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917 생활관 1층 | | | | |
| 사용수익 허가기간 | 2024.10.21. ~ 2026.10.20.(2년) [예정] | | | | |
| 사용료 예정가격 | <u>금9,258,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연간사용료)</u> ※ 낙찰자는 사용료(낙찰금액 전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선납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입찰 방법 | 지역제한, 평가방식, 총액입찰 | | | | |
| 입찰서 접수개시 | 2024.10.02.(수) 11:00 | 입찰서 접수마감 | 2024.10.10.(목) 15:00 | | |
| 개찰일시 | 2024.10.11.(금) 15:00 | 개찰장소 | 우신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 |
| 기타사항 | ○ 매점구조물 이외의 일체 필요 시설은 사용자부담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함. ○ 본교에서는 매점 판매품목, 판매가격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적정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별도의 현장 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현장 확인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일정에 따라 평가회 및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해서 우리 학교는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반드시 시장조사 및 현장확인, 사용허가 조건 등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나.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관련 사업자등록증소지자(관련 사업등록증 미소지자는 계약체결시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로 자영능력과 매점시설 부담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교직원 및 학생 등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로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항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추후 해당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즉시 낙찰 취소 및 계약 취소함)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의 무효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절차

사업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제안서 입찰(온비드) 마감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를 반영한 온비드 개찰 → 낙찰자 선정(최고 배점자) → 계약 체결

4. 입찰방법

- 가. 본 입찰은 사업제안서 평가와 가격제안서 평가를 통한 제한경쟁 평가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사업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쟁 평가방식 입찰입니다.
- 다. 사업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제출해야 하고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사업제안서 제출
 - 1) 제출방법: 우신중학교 행정실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917, 우신중학교 행정실
 - 2) 제출기한: 2024.10.02.(수) 11:00 ~ 10.10.(목) 15:00
 - 평일 근무시간(08:30 ~ 16:30) 외 제출 불가
 - 3) 제출서류
 - 가) 매점사용허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계약 체결일 까지 제출 완료)
 - 라)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마) 매점 운영사업제안서 3부
 - 자유양식으로 판매 예정 제품 목록, 위생 관리 계획, 서비스 계획 반드시 포함
 - 바) 주요 품목 판매가격 예정표 3부
- 다. 가격제안서 제출: [온비드\(http://www.onbid.co.kr\)](http://www.onbid.co.kr) 로 제출
- 라.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마감 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를 통한 납부 및 분할 납부를 허용치 않으며, 은행전산망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여 입찰 무효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낙찰자가 **최종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전자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가. 1개 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고발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나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 동일인이 2건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은 낙찰자 결정 이후라 해도 무효로 처리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이후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연기 및 취소

온비드 또는 학교의 전산 장애 및 학사일정에 따라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 - 연기 공고, 취소공고> 게재로 처리합니다.

9.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방법

- 가. 낙찰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사용료)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일시불로 우신중학교 회계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나. 신규사업자의 경우 계약 시까지 관할세무서 등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필하고 증빙서류를 우신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최종낙찰자의 계약 제출 서류: 사업제안서 제출 시 제출된 서류는 생략 가능

- 가. 화재보험증권 1부(피보험자: 우신중학교장)
-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피보험자: 우신중학교장)
-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라.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 마. 직원 현황(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포함) 1부
- 바.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사. 청렴서약서

아. 매점 판매 예정 물품 승인 요청서(판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 포함) 1부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용허가 된 재산에 대하여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것이 확인될 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환수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본교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본교의 교육목적 수행상 필요로 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니 필요한 경우 현장을 꼭 답사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릅니다.

라.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센터(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신중학교 행정실(02-2610-16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절차상의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자 본인 부담으로 하며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은 응찰자 본인에게 있으니 현장답사 및 운영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현장설명 내용, 사용허가조건 및 각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사용인은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변경을 할 수 없으며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사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제재(부정당업자 등)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중에 취소 신청 시는 납부한 연간사

용료(낙찰금액)는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자. 학교급식 메뉴(빵, 음료 등 제공)에 관한 이의제기를 할수 없습니다.

차.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사용되는 수도, 전기료는 학교측의 청구에 의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커.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신중고등학교 및 우신중고등학교 학부모회 등의 매점운영 실태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일

우 신 중 학 교 장

[붙임 1]

매점사용허가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신청인 | 성명 또는 상호 | | 생년월일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 광고개요 | 광고번호 | 우신중학교 공고 제2024-10-02호 | | |
| | 건명 | 우신중.고등학교 매점사용자 입찰공고 | | |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매점사용 허가업자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 본 매점사용 허가업자 선정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사용인감 : (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매점사용 허가업자 선정에 참가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합니다.

- 붙임서류 : 1. 매점운영사업제안서 1부
- 자유양식 위생관리계획 및 서비스 계획 포함할 것
2. 매점 운영 실적 확인서 1부
3. 판매가격 예정표 1부
4.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신청인 : (인)

우신중학교장 귀하

[붙임 2]

매점 운영 실적 확인서

1. 학교명 :
2. 운영기간 : 20 . . . ~ 20 . . .
3. 계약자 정보
가. 주소 :
나. 업체명 :
다. 대표자 성명 :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

대표 (인)

000학교장 귀하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4. . . .

○○학교장 (인)

[붙임 3]

판매가격 예정표

| 품목명 | 판매예정가 | 일반 대비 할인율 | 비고 |
|----------|-------|-----------|----|
| 부셔부셔 | | | |
| 꽃게랑 | | | |
| 예감 | | | |
| 빠빠코 | | | |
| 요맘때 | | | |
| 포카리스웨트 | | | |
| 웰치스 | | | |
| 봉봉 | | | |
| 컴퓨터용 싸인펜 | | | |
| 샤프 | | | |
| 지우개 | | | |
| 햄버거 | | | |
| 치즈브레드 | | | |
| 냉동만두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상기 기재된 품목은 우신중고등학교 학생회를 통해 조사한 선호품목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예정금액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동일한 제품의 판매가 어려울 경우 대체품으로 작성가능하나 평가시 감점될 수 있습니다.
3. 그 외 판매예정 제품에 대한 예정가격은 자유롭게 추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4. 판매가격 예정표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밀봉하지 않은 판매 가격 예정표의 가격 노출에 따른 불이익은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024. . .

신청인

(인)

우신중학교장 귀하

[붙임 4]

사업제안서 평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업체:

| 심사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 학교매점 운영 실적 | 1년 미만 5점 3년 미만 10점 5년 이상 15점 | 15 | |
| 품질위생 관리 계획 | 하 5점 중 10점 하 15점 | 15 | 주변청소 및 분리수거 계획, 전자렌지 등 기기 관리 계획, 판매 예정 냉동식품류의 HACCP 지정여부 등 종합 판단 |
| 고객 서비스 계획 | 하 5점 중 10점 하 15점 | 15 | 학생 대상 각종 이벤트 및 기타 학생 대상 서비스 계획에 대한 종합 판단 |
| 판매 예정 가격 | 시중가 동일 금액 5점 시중가 90% 이상 10점 시중가 85% 이상 15점 | 15 | 인근 슈퍼마켓 및 편의점 등의 판매금액과 비교 |
| 총 점 | | 60 | |

2024. . .

평가자

(인)

우신중.고등학교(매점) 사용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허가받은 재산의 사용은 우신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매점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허가는 2024.10.21.~ 2026.10.20. (2년)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사용료)전액과 부가가치세 10%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됨과 동시에 동사용허가는 취소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본 허가조건 제13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단, 그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화재보험 및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발생시 1인당 3천만원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판매 품목 및 가격 등)

1. 사용인은 매점운영에 따른 적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판매물품은 학교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안전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양질의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3. 사용인은 매점운영을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종사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판매상품의 품목은 빵, 우유, 음료, 과자류, 빙과류, 문구류 등 학교장의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보건당국의 허가를 득한 제조회사의 제조 연월일 및 유통기한이 확실한 제품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5. 판매금지 품목 : 고열량·저영양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판별프로그램에서 고열량, 저영양으로 판명된 식품, 카페인 함유 음료, 탄산음료, 김밥, 어묵류, 면류(라면, 우동, 국수 등), 빵류 중 햄버거·샌드위치·피자 등 소시지·샐러드·마요네즈 등이 첨가되어 변질 우려 품목, 떡볶기 등 현장조리식품(조리판매 일체행위 금지), 학교급식을 대체할 수 있는 냉동식품류, 비포장 식품류, 유해색소 등 유해성분 과다 함유 식품류, 컵모양 젤리류, 주류, 껌, 복권류 등 사행성 물품 등 기타 학교장이

판매 금지한 품목

6. 사용인은 학교 구내매점인 점을 감안하여 시중가격(소비자 표시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하며, 판매품목 및 단가를 외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7. 위생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상품의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점에서 취급한 제품으로 인한 식품위생 안전사고 발생시 사용인(매점운영자)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관리 및 운영)

1. 매점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학교에 있다.
2. 사용인은 자판기 등을 설치하여 매점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3. 매점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사용인의 요청에 의거, 학교장이 승낙한 사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인의 매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투자는 학교에 귀속된다. 단, 학교관리 및 생활지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학기 중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학생등교일에 휴점할 수 없으며, 휴점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예, 고사기간, 방학 중 보충수업 기간 등)
5. 사용인은 매점 또는 교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서는 안되며, 화재예방을 위하여 각별히 유의하고 각종 재해에 대하여는 즉각 원상복구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사용인은 매점에서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교내의 각종 쓰레기 등을 책임지고 수거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7. 사용인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히 하고, 불만사항은 즉각 수용하여야 한다.
8. 사용인은 위생관리 및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매점 주변, 운동장, 복도 등의 매점쓰레기는 매일 수업시간 중 교내를 순회하여 청소하여야 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사용인은 교육청 및 외부기관의 위생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전기요금, 가스, 수도요금 등)

제12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등과 학교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손해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3.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13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자가 학교장과 합의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단축하고자한 때
(예, 사용자의 사망, 장기간 질병, 천재지변 등)
3. 사용자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양도한 때
4. 변질된 식품 및 기타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를 입혔을 때
5. 사용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6. 학교의 행정지시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7. 판매품목 및 가격을 임의로 신설 또는 변경한 때
8. 기타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장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학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영업허가 및 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신규사업자인 경우 계약시까지 관할 세무서등에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쳐 그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을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영업배상의 손해보험과 건물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증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다.

2024. 10.

우신중학교장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우신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위한 매점 운영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발주 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우신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신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신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우신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 하는 업체는 우신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입찰참가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매점운영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3. 매점운영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매점운영, 진도(進度), 규모, 매점운영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본인)는 우신중.고등학교 매점 사용허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본인) 또는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우신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본인)가 우신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본인)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주소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성 명 :

우신중학교장 귀하